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회운영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후임 인권위원 임명기한 설정〉

■ 서미화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547호)

2025. 2.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상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 참고자료	8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서미화 · 윤종균 · 박민규 · 이기현 · 정진욱 · 김원이
임호선 · 이성윤 · 김 윤 · 문금주 · 정일영 · 장종태
김문수 · 전진숙 · 박희승 · 이광희 · 박홍배 · 조 국
조계원 · 추미애 의원(20인)

2. 제 안 일 : 2024. 11. 14.

3. 회 부 일 : 2024. 11. 15.

※ 의안번호 : 554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 임기 종료 후 후임 위원이 선출되지 않을 시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어 기존 위원의 무기한 연임이 가능한 상황임.

최근 현행법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국회 몫 인권위원이 추천되었으나 반인권적 언행 등의 무자격 논란으로 선출안이 부결된 바 있음. 하지만 후임 위원이 선출되지 않을 시 기존 위원의 직무 수행을 무기한 허용하는 현행법의 한계로 새 위원 선출 없이 연임이 계속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의 임기 종료 후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할 것을 명문화하여 무자격 위원의 연임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5
조 제8항).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인권위원의 임기가 끝난 날부터 60일 이내 후임자를 임명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8항).

[표-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⑦ (생략) ⑧ 임기가 끝난 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임기가 끝난 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되, 임기가 끝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제8항¹⁾은 임기가 끝난 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여 위원장·상임위원 및 비상임위원 등 위원의 임기만료로 인한 업무 공백의 발생에 대비하고 있음.

임기만료 위원의 직무 수행에 관한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와 비슷하게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소관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및 원자력안전위원회에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위원의 임기만료 후 직무가 연장될 수 있는 최대 기

1)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⑧ 임기가 끝난 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간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장기간 업무 수행이 계속될 수 있고, 장기간 업무 수행이 계속된다면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고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7조제1항²⁾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지적이 있음.³⁾

이에 개정안은 위원의 임기만료일부터 60일 이내 후임자를 임명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 공백 방지 필요성과 위원의 임기를 규정하고 있는 법 조항의 취지가 조화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첫째, 실효성 측면에서,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 제7조제2항⁴⁾은 위원 중 결원⁵⁾이 생기면 대통령은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결원 후 30일 이내 후임자가 임명되지 아니한 사례가 있고 대통령 지명 몫인 4명의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7명의 위원(국회 선출 몫 4명, 대법원장 지명 몫 3명)은 대통령이 단독으로 임명할 수도 없어, 해당 규정은 혼시규정에 불과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음.⁶⁾

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7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3)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법 해설집」, 2020, p.74

4) 「국가인권위원회법」 제7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② 위원 중 결원이 생기면 대통령은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5) ‘결원’은 ‘임기만료’와 구분되는 개념임. 위원이 임기 도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면직되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극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로 인정되어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퇴직하게 되거나, 외국 국적을 취득한다든지 또는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등의 이유로 당연퇴직되거나, 자발적으로 사직하는 경우 등이 결원에 해당함(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법 해설집」, 2020, p.80).

즉, 개정안과 같이 임기만료된 위원의 후임자에 대한 임명기한을 명시하더라도 훈시규정으로서 후임자의 신속한 임명을 촉구하는 선언적 효과는 있을 것이나 실질적 효력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둘째, 후임자 임명기한과 관련하여, 개정안은 임명기한을 ‘임기가 끝난 날’부터 ‘60일 이내’로 정하고 있는데, 위원의 임기는 임명 시 특정되는 것으로 그 임기만료일이 예측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후임자 임명기한을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로 정하는 것이 임기를 명시하고 있는 법 조항의 취지에 보다 부합하고 업무 공백 발생을 미연에 방지함에 있어서도 효과적일 것으로 보임.⁷⁾

참고로, 「헌법재판소법」 제6조⁸⁾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임기만료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하고, 임기 중 재판관이 결원된 경우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셋째, 법제적 측면에서, ① 개정안은 임기만료 위원의 직무 수행에 관한 내용과 후임자 임명기한에 관한 내용을 하나의 조항에 규정하고 있는데, 전자의 행위주체는 ‘위원’이고 후자의 행위주체는 ‘대통령’⁹⁾으

6)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법 해설집」, 2020, pp.74·80~81

7) 위원 결원 시 후임자 임명기한이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인 점을 고려하여 위원 임기만료 시 후임자 임명기한을 임기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음.

8) 「헌법재판소법」 제6조(재판관의 임명) ③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④ 임기 중 재판관이 결원된 경우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이 국회의 폐회 또는 휴회 중에 그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한 경우 또는 결원된 경우에는 국회는 다음 집회가 개시된 후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로서 행위주체가 다르고 행위내용도 별개의 사항이므로, 항을 나누어 각각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② 개정안의 내용을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제7조로 이동하여 규정하는 것이 법조문 체계상 보다 바람직하다고 보임.¹⁰⁾

넷째, 부칙과 관련하여, 개정안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시행일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는데, 후임자 임명기한을 법 시행 당시 임기가 끝났으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위원에게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법 시행 후 임기가 끝나는 위원부터 적용할 것인지 그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적용례를 두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9) 개정안은 행위주체인 ‘대통령’을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10) 후임자 임명기한의 수정(임기만료일)을 포함한 법제적 측면의 수정의견은 다음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수정의견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⑦ (생 략) <u>⑧ 임기가 끝난 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u>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⑦ (현행과 같음) <u>⑧ 임기가 끝난 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되, 임기가 끝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u>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⑦ (개정안과 같음) <u><삭 제></u>
제7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생 략) <u><신 설></u> <u><신 설></u> <u>②·③ (생 략)</u>	제7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현행과 같음) <u>②·③ (현행과 같음)</u>	제7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개정안과 같음) <u>② 위원의 임기가 끝나는 경우에는 대통령은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u> <u>③ 임기가 끝난 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u> <u>④·⑤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u>

문 의 처
02)6788-5017

참고 위원 임기만료 후 직무 수행 현황

□ 국가인권위원회 출범(2001. 11. 25.) 이후 2024. 11. 15.까지

직 위 (직 급)	성 명	당초 임기	직무 수행 기간	후임 성명	후임 임기	선출· 지명기관
위원장(男) (장관급)	김창국	01.11.25. ~04.11.24.	~04.12.23.	최영도	04.12.24. ~07.12.23.	대통령 지명
위원장(男) (장관급)	현병철	09.7.17. ~12.7.16.	~12.8.12.	현병철 (연임)	12.8.13. ~15.8.12.	대통령 지명
위원장(男) (장관급)	이성호	15.8.13. ~18.8.12.	~18.9.3.	최영애	18.9.4. ~21.9.3.	대통령 지명
위원장(男) (장관급)	송두환	21.9.4. ~24.9.3.	~24.9.5.	안창호	24.9.6. ~27.9.5.	대통령 지명
상임위원(男) (차관급)	박경서	01.11.25. ~04.11.24.	~04.12.23.	정강자	04.12.24. ~07.12.23.	대통령 지명
상임위원(女) (차관급)	김영혜	10.11.15. ~13.11.14.	~13.11.27.	김영혜 (연임)	13.11.28. ~16.11.27.	대통령 지명
상임위원(女) (차관급)	최혜리	16.11.28. ~19.11.27.	~20.1.12.	박찬운	20.1.13. ~23.1.12.	대통령 지명
상임위원(男) (차관급)	박찬운	20.1.13. ~23.1.12.	~23.2.5.	김용원	23.2.6. ~26.2.5.	대통령 지명
상임위원(女) (차관급)	최영애	04.7.23. ~07.7.22.	~07.9.20.	최경숙	07.9.21 ~10.9.20.	국회 선출
상임위원(女) (차관급)	최경숙	07.9.21 ~10.9.20.	~10.10.10.	장향숙	10.10.11. ~13.10.10.	국회 선출
상임위원(女) (차관급)	장명숙	12.3.8. ~15.3.7.	~15.3.15.	이경숙	15.3.16. ~18.3.15.	국회 선출
상임위원(女) (차관급)	이경숙	15.3.16. ~18.3.15.	~18.6.21.	정문자	18.6.22. ~21.6.21.	국회 선출
상임위원(女) (차관급)	정문자	18.6.22. ~21.6.21.	~21.8.5.	남규선	21.8.6. ~24.8.5.	국회 선출
상임위원(女) (차관급)	남규선	21.8.6. ~24.8.5.	~24.11.15. 현재	-	-	국회 선출
상임위원(男) (차관급)	김호준	04.12.24. ~07.12.23.	~08.2.3.	문경란	08.2.4. ~11.2.3.	국회 선출
상임위원(男) (차관급)	홍진표	11.2.21. ~14.2.20.	~14.3.6.	유영하	14.3.7. ~17.3.6.	국회 선출
상임위원(男) (차관급)	정상환	16.3.22. ~19.3.21.	~19.9.18.	이상철	19.9.19. ~22.9.18.	국회 선출
상임위원(男) (차관급)	이상철	19.9.19. ~22.9.18.	~22.10.20.	이충상	22.10.21. ~25.10.20.	국회 선출
위원(男) (비상임위원)	원형은	05.6.1. ~08.5.31.	~08.9.9.	김양원	09.9.10. ~11.9.9.	대통령 지명

직 위 (직 급)	성 명	당초 임기	직무 수행 기간	후임 성명	후임 임기	선출· 지명기관
위원(男) (비상임위원)	김양원	09.9.10. ~11.9.9.	~11.9.27.	김성영	11.9.28. ~14.9.27.	대통령 지명
위원(男) (비상임위원)	김성영	11.9.28. ~14.9.27.	~14.11.2.	최이우	14.11.3. ~17.11.2.	대통령 지명
위원(男) (비상임위원)	최이우	14.11.3. ~17.11.2.	~17.12.14.	배복주	17.12.15. ~20.12.14.	대통령 지명
위원(女) (비상임위원)	서미화	20.5.1. ~23.4.30.	~23.6.29.	이한별	23.6.30. ~26.6.29.	대통령 지명
위원(女) (비상임위원)	정강자	01.11.25. ~04.11.24.	~04.12.23.	이해학	04.12.24. ~07.12.23.	대통령 지명
위원(男) (비상임위원)	한태식	10.2.8. ~13.2.7.	~13.4.17.	한태식 (연임)	13.4.18. ~16.4.17.	대통령 지명
위원(男) (비상임위원)	한태식	13.4.18. ~16.4.17.	~16.6.15.	장애순	16.6.16. ~19.6.15.	대통령 지명
위원(女) (비상임위원)	장애순	16.6.16. ~19.6.15.	~19.7.8.	문순희	19.7.9. ~22.7.8.	대통령 지명
위원(男) (비상임위원)	문순희	19.7.9. ~22.7.8.	~22.11.21.	김종민	22.11.22. ~25.11.21.	대통령 지명
위원(男) (비상임위원)	김만흠	03.8.1. ~06.7.31.	~06.10.24.	윤기원	06.10.25. ~09.10.24.	국회 선출
위원(男) (비상임위원)	윤기원	06.10.25. ~09.10.24.	~09.12.28.	장주영	09.12.29. ~12.12.28.	국회 선출
위원(男) (비상임위원)	강명득	12.8.13. ~15.8.12.	~16.9.22.	김기중	16.9.23. ~19.9.22.	국회 선출
위원(男) (비상임위원)	김기중	16.9.23. ~19.9.22.	~20.1.12.	양정숙	20.1.13. ~23.1.12.	국회 선출
위원(女) (비상임위원)	석원정	20.7.3. ~23.7.2.	~23.7.23.	원민경	23.7.24. ~26.7.23.	국회 선출
위원(男) (비상임위원)	김덕현	01.11.25. ~04.11.24.	~05.3.14.	신혜수	05.3.15. ~08.3.14.	국회 선출
위원(女) (비상임위원)	신혜수	05.3.15. ~08.3.14.	08.3.19.	최윤희	08.9.4. ~11.9.3.	국회 선출
위원(女) (비상임위원)	최윤희	08.9.4. ~11.9.3.	~12.1.2.	곽란주	12.1.3. ~15.1.2.	국회 선출
위원(女) (비상임위원)	곽란주	12.1.3. ~15.1.2.	~15.2.4.	이은경	15.2.5. ~18.2.4.	국회 선출
위원(女) (비상임위원)	이은경	15.2.5. ~18.2.4.	~18.8.26.	김민호	18.8.27. ~21.8.26.	국회 선출
위원(男) (비상임위원)	김민호	18.8.27. ~21.8.26.	~21.10.14.	한석훈	21.10.15. ~24.10.14.	국회 선출
위원(男) (비상임위원)	한석훈	21.10.15. ~24.10.14.	~24.11.15. 현재	-	-	국회 선출

직 위 (직 급)	성 명	당초 임기	직무 수행 기간	후임 성명	후임 임기	선출· 지명기관
위원(男) (비상임위원)	김오섭	01.11.25. ~04.11.24.	~04.12.23.	나천수	04.12.24. ~07.12.23.	대법원장 지명
위원(男) (비상임위원)	한위수	15.8.10. ~18.8.9.	~18.8.26.	임성택	18.8.27. ~21.8.26.	대법원장 지명
위원(女) (비상임위원)	김수정	21.8.27. ~24.8.26.	~24.9.12.	소라미	24.9.13. ~27.9.12.	대법원장 지명
위원(男) (비상임위원)	신동운	01.11.25. ~04.11.24.	~04.12.23.	정인섭	04.12.24. ~07.12.23.	대법원장 지명
위원(男) (비상임위원)	한수웅	17.2.1. ~20.1.31.	~20.2.27.	이준일	20.2.28. ~23.2.27.	대법원장 지명
위원(女) (비상임위원)	조미경	01.11.25. ~04.11.24.	~04.12.23.	최금숙	04.12.24. ~07.12.23.	대법원장 지명
위원(男) (비상임위원)	황덕남	07.12.24. ~10.12.23.	~11.1.18.	양현아	11.1.19. ~14.1.18.	대법원장 지명
위원(女) (비상임위원)	이선애	14.1.19. ~17.1.18.	~17.1.31.	이선애 (연임)	17.2.1. ~20.1.31.	대법원장 지명
위원(女) (비상임위원)	조현욱	17.6.21. ~20.6.20.	~20.12.10. (중도사퇴)	윤석희	21.2.19. ~24.2.18.	대법원장 지명
위원(女) (비상임위원)	윤석희	21.2.19. ~24.2.18.	~24.3.14.	강정혜	24.3.15. ~27.3.14.	대법원장 지명

*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제공자료 재구성